#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용역협력업체 업무협약서

㈜**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**(이하 "갑" 이라 한다)와 **프라임리서치**_ (이하 "을" 이라 한다)는 "갑" 이 지정한 용역업무와 관련한 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.

**제1조 (목적)**
본 협약은 "갑" 과 "을" 의 개별 용역계약에 필요한 제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상호간 성실히 그 의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 (존중 및 신뢰)**
"갑" 과 "을" 은 상호 존중과 신의로써 본 협약의 이행은 물론이고 본 협약에 수반한 협력사항 발생 시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3조 (업무협약 기간)**
본 협약의 기간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협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한다.

**제4조 (업무협약 대상 및 개별계약)**

- "을" 은 "갑" 이 지정한 용역업무를 진행하고 결과물을 "갑" 이 지정한 일시에 "갑" 에게 제출한다.
- 본 협약대상이 되는 개별 용역계약은, "갑" 의 개별 용역의뢰 내역, "을"의 견적제출 및 "갑" 과 "을" 의 개별 용역비용, 일정합의 등 제반 개별 계약에 관한 일체의 상호 간 전달문서로 갈음한다.
- 업무협약 대상은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, 문서작성, 프로그램 개발 등 모든 용역계약에 해당한다.

**제5조 (개별 용역결과물의 검수, 수정 및 보완)**

- "을" 은 개별 용역업무 결과물 납품 이전에 "갑" 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, "갑" 의 수정 또는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"을" 은 이를 성실히 수정 또는 보완하여, "갑" 이 지정한 일시에 납품하여야 한다.
- "을" 은 검수에 입회할 수 있고, "갑" 의 검수합격에 의하여 납품의 책임이 완료한 것으로 한다.
- "갑" 의 요청에 의거 작업중인 목적물의 보완, 수정의 요청이 있을 경우 "을"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은 "을" 이 부담하기로 한다.

**제6조 (개별 용역업무 지체 상금)**
"을" 이 개별 용역업무이행 의무를 지체하였을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용역계약 대금의 1,000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"갑"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단, 개별용역계약 이행지체가 "을" 의 귀책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.

**제7조 (협약의 해지)**

- "갑" 은 다음 각 항의 경우 본 협약을 해제•해지할 수 있다.
  ① "을" 의 본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.
  ② "갑" 이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기타 협조요구에 "을" 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.
  ③ "을" 이 개별용역업무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이의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2일이 경과하기까지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.
  ④ "을" 이 "갑" 의 사전 승인 없이 개별용역계약에 대한 권리,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때.
  ⑤ 부득이한 사유로 쌍방이 본 협약을 상호합의하에 해지하기로 한 경우.
- "을" 은 본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지 시점에 이행 중인 개별용역계약으로 기 수령한 금액을 "갑"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 단, 1 항 5호의 사유로 본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행 중인 개별용역업무의 정산서 및 작업물을 제출하여 "갑" 의 검사를 받아 기성부분에 대하여 정산한다.

**제8조(변상의 책임)**
"을" 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, "을" 은 이로 인하여 "갑" 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**제9조 (개인정보보호)**
본 협약 이행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'개인정보보호 이행 서약서' 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협약 해지와 피해보상의 사유가 될 수 있다.

**제10조(정보보안 및 유출금지의무)**

- "을" 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"갑" 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유출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"을" 의 직원 또는 대리인도 본 의무를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.
- "을" 은 "갑" 에 관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본 협약관계가 어떠한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"갑" 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"갑" 에 관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.

**제11조 (지적재산권)**
본 협약에 의하여 제작된 제작물 및 각종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"갑" 에게 귀속한다.

**제12조 (관할법원)**
본 협약이 포괄하는 개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분쟁, 의견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며,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률적인 소송을 제기할 경우, 그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.

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 협약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. 10. 31.

(갑)
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12, 3층
(역삼동, 허바허바빌딩) ㈜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
대표이사 박 태 영 (인)
조 우 철 (인)

(을)
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60번길3-11
화산빌딩6층
옥민경 (인)